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 지정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6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참 고]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과제별 추진 일정(2023.6)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07. 04.
3. 회 부 일 : 2024. 07. 0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등으로 하여금 통학동선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위해요소 제거 및 아동발달수준을 고려한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생략) <u><신설></u>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등은 통학동선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때에는 어린이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수준을 고려한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 ~ 5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¹⁾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단위: 개)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 6.
어린이보호구역	16,896	16,759	16,641	16,490	16,375

자료: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이를 단속할 수 있으며, 신호기, 안전표지,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²⁾

하지만, 여러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인구(0~14세)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실제로는 줄지 않고 있음.

2)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5. 생략

②, ③ 생략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명, %)

구 분	'21년	'22년	'23년
사고 발생 (A)	523	514	486
사망자	2	3	2
어린이 인구(0~14세, B)	6,148,341	5,947,964	5,705,235
어린이 인구대비 사고 발생률(A/B)	0.00851	0.00864	0.00852

자료: 경찰청,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이에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의 주요 경로를 안전통학로로 지정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아동발달수준을 고려한 안전표지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과 구별되는 ‘안전통학로’ 지정·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으나, 안전통학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포함되므로 현재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일반적으로 30km/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설치 및 유지, 주정차 금지·단속 및 지정구간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안전통학로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 >

연번	안전조치	관련 근거
1	속도제한 시속 30km/h 이내 제한	제12조제1항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제12조제4항
3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	제12조제5항제1호
4	속도제한, 횡단보도, 기점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제12조제5항제2호
5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제12조제5항제3호
6	방호울타리	제12조제5항제3호의2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³⁾는 어린이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은 보행자길 신설, 차도와 보도의 분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어린이 등을 위한 보행편의 증진시설의 설치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10조), 시행 후에는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를 하는 등 사후관리(제12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안의 취지를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의 틀 내에서 실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⁴⁾

다음으로, 아동발달수준을 고려한 안전표지 설치 관련하여 현재 전체 안전표지 132개 중 보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표지는 1개(보행자 보행금지) 뿐이고, 나머지 안전표지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규제·주의·지시하는 기능을 하며, 안전표지의 형태, 내용 등은 비엔나협약⁵⁾ 등 국제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변경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할 실익 및 적절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해 학교·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 통행이 잦은 장소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도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통학로 지정 실익이 낮고,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참고로 재원 부담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198억 9,100만원(연평균 439억 7,800만원)으로 예상됨.

4)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20.1.)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 추진 등 분야별 주요 문제점 진단 후 향후 추진과제를 수립('23.6.)하여 시행 중에 있음.[참고자료 참조]

5)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8년 12월,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서명하고 1972년 7월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안전표지는 협약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 함. [경찰청, 「알기 쉬운 도로교통법 해설」, 48p, 2023. 1.]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 과제별 추진 일정(2023.6.)

과 제 명		추진유형	추진부처	추진일정				
				~'22	'23	'24	'25	'26~
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①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	시설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② 보호구역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운영	경찰청					
②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	①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사업 추진	시설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					
	②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시설 운영	행안부, 경찰청					
	③ 교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 에 안전 보행로 마련	시설	교육부					
	④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도입	운영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③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및 확산	①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운영	행안부, 경찰청					
	② 시설 등 설치기준 보완	제도	국토부, 경찰청					
	③ 도로안전시설 기준 정비(신규)	제도	국토부					
	④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법제화(신규)	제도	경찰청					
	⑤ 표준모델 시범사업 추진	시설	행안부, (지자체)					
④ 보호구역 지정개선	① 보호구역 지정 대상 추가	제도	경찰청, 행안부					
	② 보호구역 지정 확대	제도	행안부, (지자체)					
⑤ 도로외 구역 안전관리 강화	① 도로외 구역 개정 법률 관련, 하위법령 등 개정	제도	국토부					
	② 도로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등 신설	제도	경찰청					
2.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① 지자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정책 추진	① 지역교통안전협의회 활성화	관리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② 학교안전대책협의회 운영 ※ 「교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별도 운영 불필요	관리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					
	③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평가지표(안) 마련	관리	행안부					
	④ 지자체 교통안전 성과 환류 체계 개발 및 운영(신규)	관리	행안부					
	⑤ 주민참여 확대	관리	행안부, (지자체)					

과 제 명		추진유형	추진부처	추진일정				
				~'22	'23	'24	'25	'26~
[2]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전국 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 조사	관리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②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행안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③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신요	관리	경찰청					
	④ 중장기 시설개선계획 수립	관리	행안부, 기재부					
[3] 어린이 교통안전 R&D 확대	① 보호구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추진	관리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②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구축 지원	관리	행안부					
	③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측 기술 등 첨단 시스템 도입 지원 신요	관리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4] 보호구역 안전진단 확대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① 사고다발 보호구역 정비	관리	경찰청,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					
	② 점멸신호 운영체계 개선	관리	경찰청					
3.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1] 어린이 보행자 보호 및 법규 위반 처벌 강화	① 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서행의무 부과	제도	경찰청					
	②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 과태료 상향 조정	제도	경찰청					
	③ 보호구역 경찰관 추가 배치	운영	경찰청					
	④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신요	제도	경찰청					
	⑤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신요	제도	행안부					
[2]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 주차장 폐지 및 주민신고제 도입	①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운영	행안부, (지자체)					
	② CCTV 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확대	시설	행안부, (지자체)					
	③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운영	행안부, 경찰청					
[3] 주차수요를 고려, 주차환경 개선 지원	① 공영주차장 확충	시설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② IoT 주차공유제 확대	시설	행안부, (지자체)					

과 제 명		추진유형	추진부처	추진일정						
				~'22	'23	'24	'25	'26~		
4.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프로그램 활성화	① 등·하굣길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육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							
	② 일자리 연계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 확대	교육	복지부, (지자체)							
	③ 국민참여 안심 통학로 구축 사업 ^{산공}	운영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							
② 체험교육 확대 등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①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	교육부							
	② 체험교육 확대	교육	교육부, (지자체)							
	③ 아동안전지도 프로그램 도입	교육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							
③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① 운전면허 교육과정 추가	교육	경찰청							
	② 예비군 교육 등 활용, 교통안전교육 실시	교육	경찰청, (지자체)							
	③ 고위험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교육	경찰청							
④ 민·관 협업을 통한 보호구역 홍보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① 운전자 인식 제고를 위 한 대비게이션 캠페인	홍보	행안부							
	②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 인 줄로건 제작	홍보	행안부, 문체부, 국토부, 경찰청							
	③ 관계기관 합동 홍보 추진	홍보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5.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①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① 신고의무대상 확대	제도	경찰청, 문체부							
	② 신고 체육시설에 체육교습업 신설	제도	문체부							
② 통학버스 관계자 안전인식 제고	①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 설 일제점검 실시	관리	경찰청,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② 경찰관 방문 교통안전 교육 실시	교육	경찰청							
	③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	경찰청							
③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 강화	①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 단속	운영	경찰청							
	②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사항 처벌 강화	제도	경찰청							
④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drop zone) 도입	①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도입 및 운영	제도	경찰청							
	② 보호구역 내 주정차 특례 관련 매뉴얼 마련	관리	경찰청, 행안부							